

의안 번호	2529	<p style="text-align: center;">[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h1 style="text-align: center;">심사보고서</h1>
----------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12. 5.(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2. 5.(금)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6.(수)

## 2. 제안설명 요지(문화의전당 관장 김미경)

### 가. 제안이유

- 문화의전당 개관 이후 그동안 운영상황을 반영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사용료, 운영내용 등을 정비하여 문화의 전당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부가가치세 납부규정 삭제 및 사용료 납부기한 예외규정 신설  
(안 제8조제1항)
- 사용료 반환 규정 구체화 및 운영자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안 제8조제4항)
- 문화예술단체 공연에 대한 운영 공정성 제고를 위해 특례 감면 삭제(안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관람권 검인 필수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및 관람권 수탁·대행 규정 삭제(안 제12조)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정비(안 제13조제2항)
  - 무료입장권 발행 → 유보석 지정

- 문화센터 운영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기강좌 12주 과정 원칙 규정 삭제(안 제15조)
- 불필요한 조문 삭제
  - 제25조(시행규칙)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

#### 다.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소비자보호법」 제16항 및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8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3의2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조 및 제3조의 별표Ⅱ 중 10

###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명주)

#### 가. 검토사항

- 제정배경
  - 문화의전당 개관 이후 그동안 운영상황을 반영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사용료, 운영내용 등을 정비하여 문화의 전당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
- 내용검토
  - 사용료 납부 및 반환(안 제8조제1항 및 안 제8조제4항)
    - 부가가치세 납부 규정 삭제로 사용료 전액 구비화
    - 사용료 납부기한 예외 규정 신설로 사용자 현실 반영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 사용료 반환 규정 3가지 추가하여 구체화하고 운영자 귀책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로 운영의 책임성과 사용자 권익 보호

- 특례감면(안 제9조제1항~3항)
  - 문화예술단체의 흥행성 있는 유료공연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 적용 특례 조항은 일반 문화예술단체 공연과의 형평성 논란 발생의 여지가 있고, 흥행성 개념 모호하여 해당규정 삭제로 운영 공정성 제고
- 관람권의 발행 등(안 제12조)
  - 관람권 접수 강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유연성 확보
  - 관람권 수탁·대행 규정 삭제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관련된 법적 분쟁 소지 최소화
- 개설(안 제15조)
  - 정기강좌 12주 과정 규정을 삭제하고 수요에 따라 강좌기간 조절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운영의 유연성 향상

## 나.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의전당 개관 이후 그동안 운영상황을 반영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사용료, 운영내용 등을 정비하여 문화의 전당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 부가가치세 납부규정 삭제 및 사용료 납부기한 예외규정 신설, 안 제8조제4항 반환 규정 구체화 및 운영자 귀책사유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 신설, 안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문화예술단체 공연에 대한 운영 공정성 제고를 위해 특례 감면 삭제, 안 제12조 관람권 검인 필수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및 관람권 수탁·대행 규정 삭제, 안 제13조제2항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정비, 안 제15조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기강좌 12주 과정 원칙 규정 삭제 등임.
- 전반적으로 제반 사항 검토한 바,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선제 반영으로 그간 문화의 전당 운영 상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

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큰 거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4. 8. 27.>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3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text{반환금액} = [\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경과한기간(일수)}}{\text{계약상이용기간(일수)})] - \text{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text{반환금액} = [\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이용횟수}})] - \text{위약금}$
2. 법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개시일 전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나. 이용개시일 이후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text{반환금액} = [\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경과한기간(일수)}}{\text{계약상이용기간(일수)})] + \text{위약금}$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text{반환금액} = [\text{이용료} - (\text{이용료} \times \frac{\text{이미 이용한 횟수}}{\text{계약상이용횟수}})] + \text{위약금}$

**비고**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 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 연수표는 각각 별표 I, 별표 II, 별표 III, 별표 IV와 같다.

별표II중 10 <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⑥할인회원권업 (1-2)		
분쟁 유형	해결 기준	비고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계약해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은 제외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	
3) 신체상 피해 발생	○ 배상액 배상	
4)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배상액 배상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 / 계약상 이용 기간(일수))] + 위약금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이용한 횟수 / 계약상 이용 횟수)] + 위약금	·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함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음
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 반환금액 환급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경과한 기간(일수) / 계약상 이용 기간(일수))] - 위약금  · 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이미 이용한 횟수 / 계약상 이용 횟수)] - 위약금	*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